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정 2011. 07. 05.

전면개정 2014. 04. 02.

제1장 총 칙

- 제1조(근거 및 목적)** ① 본 규정은 대한농아인체육연맹(이하 "본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2장에 근거하고 본연맹에 가맹이 승인된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가맹단체는 당해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전국을 통할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하되, 대한농아인○○협회라 칭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한다.

제2조(소재지) 가맹단체의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3조(목적) 가맹단체는 각 소관 경기종목 및 해당 장애 영역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하여 농아인의 체력을 향상케 하며,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아인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아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가맹단체는 가입을 승인한 시·도지부 및 가맹을 승인한 전국규모연맹체로 조직한다.

- 제5조(지부)** ① 가맹단체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지부(이하 "시·도가맹단체"이라 한다)를 둔다.
- ② 이 경우 시·도가맹단체는 지부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시·도농아인체육연맹에 가맹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전국규모연맹체) ① 가맹단체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가맹단체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정한 후 본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는 전국규모연맹체에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범위내의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7조(사업) 가맹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 경기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해당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전국규모연맹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
5. 해당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해당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경기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관리
8. 해당 경기자 및 심판, 전문지도자 등의 양성
9. 해당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0.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홍보
11. 해당 경기종목의 경기규정집 발간 및 관리
12. 해당 경기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권리와 의무) ① 가맹단체는 본연맹 정관 제10조에 따라 본연맹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연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가맹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연맹 정관 제43조에 따라 감사 및 징계를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단체지정) ① 본연맹은 가맹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② 본연맹은 가맹단체가 본연맹 정관, 규정 등의 위반, 가맹단체장의 결원,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단체에 대해 본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관리단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⑤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가맹·탈퇴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⑥ 가맹단체로서 의무사항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본연맹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감액, 회수,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가맹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20인 이상 30인 이내
3. 감사 2인

② 임원의 취임은 본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본연맹은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제한 기간 산정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회의 의결로 정한 본연맹 임원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과 동일하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1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 체육진흥과 농아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임원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30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까지로 한다)에 한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사 중 3인 이상은 농아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3. 이사 중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실무부회장의 수,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실무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가맹단체의 임원은 제1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⑧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본연맹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가맹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무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실무부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가맹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가맹단체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연맹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⑤ 임원이 가맹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가맹단체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시·도가맹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가맹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가맹단체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본연맹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본연맹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본연맹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및 그밖의 체육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
-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임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

입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5조에 해당하는 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본연맹으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3. 가맹단체 및 시·도가맹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18조(명예회장 및 고문) 가맹단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본연맹의 다른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0조(본연맹의 가맹단체 및 시·도가맹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본연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단체 및 시·도가맹단체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본연맹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가맹단체의 규정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21조(대의원) ① 가맹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도가맹단체의 장
2.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3. 해당 종목 선수위원회 대표(대리참석 불가). 다만 선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가맹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심판위원회 대표

② 가맹단체 시·도지부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2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당해 단체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맹단체 시·도지부, 전국규모연맹체 설치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감사가 제1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본연맹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실무부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라 이어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회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실무부회장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부회장, 전무이사 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 회의를 5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부의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제1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연맹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3조(설치) ① 가맹단체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기위원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 선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기능·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부는 선수자격심의위원회 및 선수위원회 등을 두지 않는다.

②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가맹단체 시·도지부

제34조(지위 및 명칭) ① 시·도가맹단체는 가맹단체의 시·도지부이며,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도가맹단체는 시·도농아인체육연맹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시도에 둔다.

③ 시·도가맹단체는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5조(임원 승인) ① 시·도가맹단체의 임원은 시·도농아인체육연맹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농아인체육연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 승인을 사무국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규정 승인) ① 시·도농아인체육연맹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시·도가맹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가맹단체는 제1항의 당해 시·도농아인체육연맹 가맹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당해 가맹단체의 규약(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도농아인체육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 경기종목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중앙경기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37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도가맹단체는 해당 가맹단체에 시·도농아인체육연맹의 규약 및 임원 승인 사항을 즉시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가맹단체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농아인체육연맹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농아인체육연맹은 가맹단체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연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단체는 시·도가맹단체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가맹단체를 감사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본연맹 정관 및 본 규정, 시·도농아인체육연맹 및 각 가맹단체규약(또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④ 가맹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가맹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⑤ 가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 에 대해서 시·도농아인체육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시·도가맹단체 총회) ① 시·도가맹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도가맹단체가 지부로 승인한 시·군·구가맹단체의 장

2. 해당 종목 시도선수위원회 대표(대리인 참석 불가)

② 시·도가맹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농아인체육연맹에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시·군·구지부의 대표 3인 이상 및 선수위원회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시·도가맹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시·도가맹단체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연맹 정관 및 이 규정 중 가맹단체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40조(자산) 가맹단체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단체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본연맹지원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수익금

- 제41조(재산의 구분)** ① 경기단체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경기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2조(재산관리) 가맹단체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4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연맹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 제4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가맹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사무국

- 제45조(사무국)** ① 가맹단체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

제46조(사무국 규정)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1. 회계규정
2. 국가대표 선발규정
3. 위임전결규정

제10장 보칙

제47조(규약변경) 가맹단체의 규약(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

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연맹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규정 제·개정) ① 가맹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경기단체의 규약(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 외에 당해 가맹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으로 정한다.

제49조(규약의 해석) ①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가맹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으로 이하 같다)은 본연맹이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본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본연맹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각 가맹단체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연맹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가맹단체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연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0조(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가맹단체는 본연맹과 시·도농아인체육연맹을 포함하여 당해 단체의 지부 및 소관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본연맹 정관 제33조에 의거 설치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당해단체 정관(또는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부 칙("14.04.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연맹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